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4.10)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하고, 그간 단년제로 운영하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5년 계획기간 단위로 개편하며,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법령상의 위탁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법률로 상향입법('24.10) 된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지원 근거 및 자료 제출 요청(제2조제1·2항 삭제),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삭제) 삭제
-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 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 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계획기간·자료제출기간 조정(안 제19조제4항 신설, 안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1·2항 및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

~10항 개정) 및 자발적 참여 허용(안 제19조제5~7항 신설)

마.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
(안 제57조제6항 개정)

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 등의 국제상호 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을
마련하고(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이의 위임근거 조항 신설
(안 제73조제2항제1~3호 신설)

사. 업무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등

- 1)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안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제7항 개정)
- 2) 법 제66조제5항(신용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 및 제67조제3항(탄소
중립포인트 등)의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74조제2항제14호
삭제, 제74조제16항 및 제74조의2 신설)
- 3) 해양수산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제출 지원의 위탁기관을
해양환경공단으로 지정(안 제74조제14항제6호 신설)
- 4)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을 부처별로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74조제17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20. ~ 2025. 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산업·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국민 참여,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규모는 국무조정실장이 고시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 등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1년”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목표를 부여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행연도란 1년 단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기간 내 각 연도를 말한다.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중에서 자발적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이하 “자발적참여업체”라 한다)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⑥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자발적참여업체와 제6항의 신규진입자에 대한 지정 및 목표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전전년도”를 각각 “전년도”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기간”을 “이행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기간 해당 연도”를 “이행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기간 전전년도부터 해당 연도”를 “이행연도 전전년도부터 이행연도”로, “계획기간 전년도”를 “이행연도 전년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3월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계획기간”을 “이행연도”로, “5월 31일”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계획기간 다음”을 “이행연도 다음”으로, “6월 30일”을 “9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계획기간”을 “이행연도”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한 제안, 토론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청에 예산·인력 확보 및 교육·홍보·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통신

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장”으로 한다.

제57조제6항 중 “3년으로”를 “4년으로”로, “3년 이내”를 “4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금융위원장”으로 한다.

제10장에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국제상호인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 제35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검증 등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 정부 기관 또는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9조의3(국제표준 기반 검증기관 인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제66조 탄소중립 이행과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관련 국제기구에서 제정·도입하는 검증제도 시행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등을 검증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 중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조사 및 공개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조사 및 공개
2. 제69조의2에 따른 기관 간 약정의 체결
3. 제69조의3에 따른 국제표준 기반 검증기관 인정·관리

제74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해운·항만·연안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제출 지원

⑯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업 지원

2.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 지원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수행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무역보험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2.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2항에 따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3.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4조제1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 변경 등) ① <u>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탄소중립국가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u>정부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u>	제2조(탄소중립국가전략의 수립 · 변경 등)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삭 제>

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도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
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
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⑦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탄소중립시·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1	<u>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산업·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국민 참여,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u> <u>② 분과위원회의 규모는 국무조정실장이 고시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다.</u> <u>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 등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
--	--

년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에 목표를 부여하
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기
간---.

④ 이행연도란 1년 단위로 온실
가스배출관리업체의 이행실적
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기간 내
각 연도를 말한다.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량 미
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
체 중에서 자발적 참여 신청서
를 제출한 업체(이하 “자발적참
여업체”라 한다)를 온실가스배
출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⑥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계획
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
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업
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
를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
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자발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 전전년도의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지정 대상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5월 31일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생략)

적참여업체와 제6항의 신규진입자에 대한 지정 및 목표관리
에 관한 세부 사항을 부문별관
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한
다.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① -----

전년도-----
-----.

② -----

----- 전년
도-----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를 지정한 부문별관장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온
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
고,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6월 3
0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생략)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
목표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
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
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
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부
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등록부를 작성해
야 한다.

④ (생략)

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④ -----

----- 전년도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행연도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 이행연도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획기간 전전년도부터 해당 연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을 말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라 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전년도의 3월 31일
2. 계획기간 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3.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온실

----- 이행
연도 전전년도부터 이행연도---

----- 이행연도
전년도 -----

이행연도 다음 연도의 3월31일

<삭 제>

<삭 제>

<삭 제>

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⑥ (생략)

⑦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내용과 검증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⑧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기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⑨ (생략)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제2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계획기간

⑥ (현행과 같음)

⑦ -----

--- 이행연도 ----- 8월 31일-----

-----.

⑧ -----

--- 이행연도 다음 ---- 9월 30일-----
-----.

⑨ (현행과 같음)

⑩ -----

----- 이행연도-----

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⑪ (생략)

<신설>

제56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

-----.

⑪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한 제안, 토론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청에 예산·인력 확보 및 교육·홍보·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

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
회위원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0
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녹
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
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
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① ~
⑤ (생략)

⑥ 녹색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
고,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 및 녹
색전문기업 확인의 대상·기준
·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
정, 녹색인증등위원회의 구성·
운영,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
업확인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 방송통신위원
회위원장, 금융위원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
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4년으로 ---
----- 4년 이내---
-----.

⑦ -----

등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
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
한다.

<신 설>

<신 설>

----- 중소벤처기
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
장과 금융위원장-----
-----.

제69조의2(국제상호인정 등) 환경
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온
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 제35
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의 추
진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탄소
중립 이행 검증 등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 정부기관 또
는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9조의3(국제표준 기반 검증기
관 인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제66
조 탄소중립 이행과 관하여 국
제표준화기구(ISO)와 관련 국
제기구에서 제정·도입하는 검증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조사 및 공개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③·④ (생략)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13. (생략) 14.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	<u>제도 시행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등을 검증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u>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의</u> ----- ----- ----- ----- -----. 1. 제40조에 따른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상시 측정·조사 및 공개 2. 제69조의2에 따른 기관 간 약정의 체결 3. 제69조의3에 따른 국제표준 기반 검증기관 인정·관리 ③·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3. (현행과 같음) <u><삭제></u>
--	--

도 시행 지원

15. · 16. (생 략)

③ ~ ⑬ (생 략)

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에 위탁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⑮ (생 략)

<신 설>

<신 설>

15. · 16. (현행과 같음)

③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 · 수산 · 해운 · 항만 · 연안 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작성 · 제출 지원

⑮ (현행과 같음)

⑯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 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업 지원

2.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 지원

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수행업

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
른 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
른 무역보험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촌공사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
른 한국임업진흥원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

<신 설>

른 해외건설협회

1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
른 한국수출입은행

12. 「해외건설 촉진법」 제28
조2항에 따른 해외인프라·도
시개발지원공사

13.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적
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
심의회에 승인을 거쳐 지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4조제16항에 따
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
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하
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기후전략과	
연 락 처	(044) 201 - 6652